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서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482호)
- 이병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019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농업인에게 공급되는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의 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한시 적용(서천호의원안, 이병진의원안) ...	3

I. 개요

1. 서천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5482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서천호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11. 12.
- (3) 회 부 일 : 2024. 11. 1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 용역 등 일정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가공되지 아니한 농산물의 운송용역 중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어, 운송업체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함에 따라 늘어난 운송비를 농업인에게 전가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가공되지 아니한 농산물을 운송하는 용역으로서 농업인을 위하여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제5호의2 신설).

2. 이병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7019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병진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2. 27.

(3) 회 부 일 : 2024. 12. 3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식용으로 제공되는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그 농산물을 운송하는 경우 그 운송비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음.

따라서 농산물 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시 부가가치세로 인하여 농업인의 부담이 증가하여 운송업체와 운송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세금계산서 미발행(무자료 거래)으로 거래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농업인이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을 운송하는 경우 그 운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

Ⅱ. 검토의견

1. 농업인에게 공급되는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의 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한시 적용(서천호의원안, 이병진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제105조 제1항) ☐ 영세율 적용대상 -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방산물자, 군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 국가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 건설용역, 장애인용 보장구, 농·임·어업인에 공급하는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등 - <신 설>	☐ 영세율 적용 대상 추가 ☐ 영세율 적용대상 - (현행과 같음) - <u>가공되지 아니한 농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을 운송하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을 위해 공급하는 것</u> - <u>적용기한</u> · 2028년 12월 31일(서천호의원) · 2030년 12월 31일(이병진의원)

* 서천호의원안 2024. 11. 12. 발의(의안번호 5482), 이병진의원안 2024. 12. 27. 발의(의안번호 7019)

☐ 2건의 개정안은 농업인에게 공급되는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의 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으로, 그 적용기한을 서천호의원안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이병진의원안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려는 것임.

□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상 수출하는 재화 등에 예외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¹⁾, 그 외에 조세정책적인 목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서 방산물자, 군납용 석유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과 그 건설용역, 장애인용보장구, 농어민에게 공급하는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하여 영세율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영세율 제도는 부가가치세율을 '0'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면세 제도와 달리 전단계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는다는 점에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고 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됨(이론상 '완전면세').

□ 2건의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는 긍정적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농산물 출하 단계에서 농업인에게 제공되는 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면세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음.

영세 농업인은 부가가치세의 절감을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운송사업자와 거래하는 대신 운송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 무자료 운송업자와 거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운송물 파손, 분실, 도난 등에 따른 손실을 농업인이 감수해야 하는 경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에는 외국으로 수출하는 재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외국항행용역, 외화 획득을 위한 재화·용역이 있음.

우가 빈번하므로, 개정안이 입법화되는 경우 세제지원을 통해 영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농산물 물류비는 유통비용(55조 7,190억원) 중 26.9%(14조 9,949억원)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21년 대비 3.5%(5,103억원) 증가한 수치임.

또한, 유통 단계별 물류비 비중은 산지 출하단계가 63.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농산물 생산자 출하액·유통비용·소비자구입액 현황]

구분	생산자 출하액 (A)	유통비용(B)			소비자 구입액 (C=A+B)
		물류비	기타유통비용	계	
2022	56조 3,917억원 (50.3%)	14조 9,949억원 (13.4%)	40조 7,241억원 (36.3%)	55조 7,190억원 (49.7%)	112조 1,107억원 (100.0%)
2021	56조 5,609억원 (51.2%)	14조 4,846억원 (13.1%)	39조 4,250억원 (35.7%)	53조 9,096억원 (48.8%)	110조 4,705억원 (100.0%)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농산물 단계별 물류비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출하단계		도매단계		소매단계		합계	
	물류비	비율	물류비	비율	물류비	비율	물류비	비율
합계	94,740	63.2	32,100	21.4	23,109	15.4	149,949	100.0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둘째, WTO 수출보조 철폐 합의²⁾에 따라, 우리나라는 2024년 1월

2) 2015년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10차 각료회의에서 WTO는 수출보조 철폐(선진국 즉시, 개발도상국 3년 유예-2018년 말까지)와 개발도상국 수출물류비 철폐 8년 유예(2023년 말까지) 등에 합의했고, 당시 개발도상국 지위에 있던 우리나라는 수출물류비 지원 8년 유예라는 결과를 받아들게 됨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 전격 폐지되었음.

1일부터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 전격 폐지되었으며, 이로 인해 현지의 농산물 판매단가 인상 및 수출 경쟁력 상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개정안을 입법화하는 것은 폐지된 농산물의 수출물류 지원을 보완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됨.

1998년부터 시행된 수출농산물 물류비 지원은 국내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지원이 폐지되면 현지 판매단가 상승으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특히, 수출업체는 물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판매단가 인상이나 농가 수취단가 인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이는 국내 생산농가의 수익 감소와 일부 수출업체의 경영난으로 이어질 수 있어 물류비 지원 폐지는 농산물 수출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임.

셋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³⁾에 따라 농·임·어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중이므로, 식량안보 측면에서 농업 등 1차 산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의 운송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다만, 2건의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우리나라는 극히 제한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특정 재화의 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면세를 적용한 사례가 없어 개정안과 같이 농산물 운송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할 경우 과세형평성 문제와 타 분야에 대한 적용 확대의 요구가 있을 수 있음.

둘째, 농산물과 일반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경우 농산물에 대한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유인이 생기며,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려는 시도가 발생할 수 있음.

특히 일반화물을 농산물로 위장하거나 농산물 비율을 부풀리는 등 탈세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셋째, 현재 농업인에 대해서는 영농비용 절감을 위하여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근거로 다양한 조세정책과 재정정책⁴⁾이 시행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조세정책으로는 「소득세법」에 따른 식량작물재배업 비과세, 10억원 이하의 일반 작물재배업의 수입금액 비과세 및 5천만원 이하의 어로어업 소득 비과세(제12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농·

4) 농식품부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2024년부터 수출물류비 지원이 폐지되지만,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수출전문조직 육성 등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였음. 특히, 신선농산물 품질관리부터 물류·홍보까지 통합하여 관리하는 세계 표준(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수출전문조직 육성과 농식품 수출기업이 필요로 하는 홍보, 상품개발, 시장개척에 필요한 사항을 메뉴판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농식품 국제 성장패키지(수출 바우처)를 대폭 확대하였고, 국내 산지부터 해외 소비지까지 저온유통체계(콜드체인 시스템) 적용을 위한 씨에이(CA) 컨테이너, 저온창고, 냉동차량 지원 등 신선농산물에 특화된 물류체계 구축 예산을 반영하였음.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제66조·제67조·제68조), 자경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69조),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특례(제105조의2),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제106조의2) 등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농업인등에 대한 조세정책]

근거		내용
「소득세법」 제12조		· 식량작물재배업 비과세 · 10억원 이하 일반 작물재배업의 수입금액 비과세 · 5천만원 이하 어로어업 소득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 영농·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제69조	· 자경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105조제1항 제106조제2항	·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의 공급 및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
	제105조의2	·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재정정책으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농어업인의 복지, 보건의료, 교육여건 등을 개선하고 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의 피해 보전 및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한편, 기획재정부는 현재도 농민들의 영농 비용 절감을 위해 영농기자재 영세율·사후환급, 면세유 등 폭넓은 세제를 지원하고 있고,

농·어민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직불 예산을 확대하는 등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참고로, 유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⁵⁾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계류되어 있으며, 농·임·수산물의 출하를 위하여 농·임·어업인에게 공급하는 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려는 내용임.

문 의 처
02)6788-5147

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대표발의, 2024.10.25.)(의안번호 2204901)